

공민서신



기안용지

문서번호	법무 181.19-937	제호	504	전경부실	도	항
문서일자	1982. 12	시		인	경	사
보급년월	영구(강)	장				
보	부시장	시				
포	책물관리부장	시				
기	법무담당관	시				
안	이상돈	1982. 12.				
장						
수	각안참조					
신						
합						
주						
제	서울특별시지방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정					
목	(제1안) 내부결재					
	1. 인사 181.5-386 (82. 12. 9) 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연구직공무원의 호봉승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7회 법규준비					
	심의회 (82. 12. 22) 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지방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정					
	을 별첨(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첨 부 1. 제정이유 및 주요문자.					정서
	2. 제정안					
	3. 참고자료 각 1부 끝.					
	(제2안)					관인
	수신 공보관					
	제 목 시보게재					발송
	별첨 서울특별시지방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한 것					
	첨 부. 서울특별시 훈령 제. 로 1부 끝.					

G201-1-6A (강)
1969. 11. 10 승인

190mm x 268mm (2 단위) (세로 45mm)

수/3 1107

(제 3 단)

수 사 인사과 장

제 목 훈령발령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위원 발령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나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함 것.

첨 부.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 부. 끝.

1. 제정 이유

지방연구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직 공무원의 호봉승급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연구직 공무원 승급심사위원회 설치 종류 및 관할대상

○ 설 치

· 연구관 승급 심사위원회 : 서울특별시 본청에 설치

· 연구사 승급 심사위원회 : 종합기술시험연구소에 설치

○ 종류 및 관할기능

· 연구관 승급 심사위원회 : 연구관의 호봉승급심사

· 연구사 " " : 연구사의 " "

○ 의 원

· 연구관 승급 심사위원회(5명) : 위원장 : 부시장

· 의원 : 내무국장, 보사국장, 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 환경복지국장

· 연구사 승급심사위원회(5명) 위원장 : 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

· 의원 : 회의시마다 종합기술시험연구소 관리부장 및 소속

연구관중 위원장 임명

○ 운 영

· 연구관 승급 심사위원회 : 위원당연직

· 연구사 " " : 수시 위촉 운영

1199

A2

1982.12.31

나. 위원회 사무직원 임명

구 분	간 사	서 기
연구관 승급 심사위원회	인사과장	보임계장
연구사 승급 심사위원회	종합기술시험 연구소서무과장	종합기술시험 연구소서무계장

* 회의록은 호봉승급 심사 결정서로 가롭한다.

다. 호봉 승급 심사

- 시기 : 1년2회(6월,12월)
- 심사기준 : 승급 대상자의 연구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자세
기라 제출된 관계 자료를 종합 참작 심사
- 자료 제출 : 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
각 위원회에 제출
- 평 정 : 평정요소별 매점에 의거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하고 종합평정점 60점 미만자에 대하여는
승급 제한 (연구관: 1년, 연구사: 6월)

3. 관련 법규 : 가. 별첨 관계법규 참조

나. 보사부 연구직 공무원 승급심사 규칙1부. 끝.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 공무원 승급심사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백

1201

810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 공무원 승급 심사규정(안)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 공무원 승급심사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규정은 지방연구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연구직 공무원의 승급 심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이하"종합기술시험 연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공무원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연구관 승급 심사위원회"를 종합기술시험 연구소에 "연구사 승급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3조 (위원회구성)

- (1) 연구관 승급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내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 환경녹지국장이 된다.
- (2) 연구사 승급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시마다 종합기술시험연구소 관리부장 및 소속 연구관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 (4) 연구관 승급 심사위원회의 관사는 내무국 인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과 보임계장이 된다.
- (5) 연구사 승급심사위원회의 관사는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서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무계장이 된다.

제4조 (승급심사)

-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승급 대상 직종은 "법제"와 같다.
- (2) 위원회의 승급심사는 매년 7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 (3) 위원회는 승급심사를 함에 있어 승급 대상자의 연구심력과 직무 수행능력, 선.후진 상급감독자의 의견, 복무상의 태도 기타 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 (1) 위원회의 회의는 적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위원장은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영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원회의 회의록은 법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 심사 결정서로 압축한다.

제6조 (자료 제출)

중화기술시험연구소장은 매년 5월말과 11월말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연구직 공무원 승급후보자 명부 (별지 제1호 서식) 승급심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직 공무원 명장자로 (별지 제3호서식) 및 연구직 공무원 명장표 (5부) (별지 제4호서식)를 각각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평정)

- (1)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평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평정요소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학력 보상을 가점하고, 경계등을 감점한다.
- (2) 평정점은 100점으로 하고 평정주와 관련된 각과 5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다.
- (3) 가점 및 감점을 각각 5점 이내로 한다.

(4) 종합평정점 또는 위원회의 조정점이 6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송급을 제한한다.

제8조(평정자와 확인자) 연구직 공무원 평정표와 송급심사 신청서 작성을
위한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2"와 같다.

제9조(비밀유지) 이규정에 의한 평정자료는 공개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획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타사항) 이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송급심사에 의하여 송급하는 호봉



연구관	연구사
◦ 3호봉에서 4호봉으로	◦ 3호봉에서 4호봉으로
◦ 7호봉에서 8호봉으로	◦ 7호봉에서 8호봉으로
◦ 10호봉에서 11호봉으로	◦ 11호봉에서 12호봉으로
◦ 14호봉에서 15호봉으로	◦ 15호봉에서 16호봉으로
◦ 18호봉에서 19호봉으로	◦ 19호봉에서 20호봉으로
◦ 22호봉에서 23호봉으로	◦ 23호봉에서 24호봉으로
◦ 26호봉에서 27호봉으로	◦ 27호봉에서 28호봉으로
◦ 29호봉에서 30호봉으로	◦ 29호봉에서 30호봉으로
송급할때	송급할때

(별표 2)

병정자, 확인자

병정대상 구분	부장급 이상 연구관	과장급 연구관	연구사	비고
병정자	소장	부장	과장	
확인자	부시장	소장	부장	

1205

806

(제1호 서식)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 명부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부서~~ (2)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영양점	가점	합점	영양점 조정 합점	비고

(제2호 서식)

승급심사신청서

1. 심사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연호봉	승급심사 호봉	대상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1206

885

2. 종합영양

구분	영양성분				가점	비고	비고
	계	연구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자세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실 송급심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호봉
 송급 심사 신청서를 별첨 증빙서류 첨부 제출합니다.

198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 (인)

연구관 송급심사위원장 귀하
 연구사

송급심사결정서

결정내용	가	부
------	---	---

19 년 월 일

의원장 : 직위 성명 (인)
 의원 : 직위 성명 (인)
 의원 : 직위 성명 (인)
 의원 : 직위 성명 (인)
 의원 : 직위 성명 (인)

1207

804

(제3호 서식)

연구직 공무원 명정 자료

소속	직명	성명

1. 연구실적

년도별	명정기준	내용
	◦ 논문발표 (총 건)	
	◦ 시책건의 (건)	
	◦ 기초자료 활용 (건)	
	◦ 기타 (건)	

2. 가 점

년월일	흔적	포상내용

3. 감 점

년월일	종류	내용

상기 내용을 확인함.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 (인)

1208

제4호 서식

연구실공무원명정표

명정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1. 명정 대상자

소 속	직 명	성 명	전화번호

2. 명 정

가. 연구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복무 자세 (100점)

명정요소 및 배 점	명 정 기 준	배점	연 영 면			비고
			명정자	확인자	양명	
합 계		50.0				
연구실적 (36점)	◦ 논문 의 진 과 양	5.0				
	◦ 시책 건 의	5.0				
	◦ 기 여 도	4.0				
	◦ 기 초 자 료 활 용	4.0				
직무수행 능력 (34점)	◦ 전 문 지 식	5.0				
	◦ 상 의 력	5.0				
	◦ 추 진 력	4.0				
	◦ 성 실 성	3.0				
복무 자세 (30점)	◦ 국 가 관	3.0				
	◦ 정 연 도	3.0				
	◦ 책 임 감	3.0				
	◦ 협 동 심	3.0				
	◦ 성 실, 근 면 성	3.0				

1209

AS

* 각항목을 학원(), 우수(), 모용(), 미흡()로 명징하되
점수 비율은 (100%) (80%) (60%) (40%)로 한다.

나. 가점(5점)

명징요소	내 용	개점	평점	비고
포 상	◦ 훈장,포장,모범공무원 포상 및 청백봉사상	2.5		
	◦ 대통령 표창	2.0		
	◦ 국무총리 표창	1.5		
	◦ 장관표창	1.0		

승급기간중 1회만 활용

다. 감점 (5점)

구 분	내 용	배점	평점	비고
징계 등	◦ 경고 및 주의 (2회)	2		
	◦ 견책이상 징계 (1회)	5		

* 승급기간중 1회만 활용

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 구분과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승급 심사등)

- (1) 연구직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별표 6"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호봉의 재확정의 경우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관을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시킬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및 연구사 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위원회는 승급심사 대상 연구직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이나 상위직공무원 또는 재직년수가 많은 연구직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승급심사에 필요한 심사기준,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 16조 (승급심사에 따른 승급 제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서 연구실적등이 불량하여 심사에 합격되지 못한자는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기간동안 승급을 제한한다

1. 연구관 : 1년
2. 연구사 : 6월

1211